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)

및

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(1976)에 관한

상설중재재판소

사건 번호 2018-55

1. 메이슨 캐피탈 엘.피. (MASON CAPITAL L.P.)
2.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(MASON MANAGEMENT LLC)  
(이하 '청구인')

대한민국

(이하 '피청구국')

(‘청구인’ 및 ‘피청구국’의 집합은 ‘당사자들’로 칭한다.)

---

## 절차 명령 제 2 호

---

중재판정부

Professor Dr. Klaus Sachs (의장중재인)

The Rt. Hon. Dame Elizabeth Gloster

Professor Pierre Mayer

사무국

상설중재재판소

2019년 3월 5일

2019년 1월 25일 피청구국이 본안 전 이의제기 서면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, 이하 “FTA”) 제 11.2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본안 전 이의를 제기한 바,

2019년 2월 19일 제 1 차 절차 심리에서,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관련, 당사자들의 확정을 요하는 잠정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,

동 잠정일정의 확정 관련, 청구인이 2019년 2월 28 일자 서한을 통해 동의를 표하고, 피청구국 또한 2019년 3월 4 일자 서한으로 동의를 표한 바,

제 1 차 절차 심리에서,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 중 본안단계로 피청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이의제기의 병합에 관한 제안을 논의한 바,

2019년 2월 28 일자 서한으로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에 동 제안의 인준을 요청한바,

2019년 3월 4 일자 서한으로 피청구국이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를 요청할 권리를 유보하고, 중재판정부에 추가적인 관할권 단계의 가능여부에 관한 모든 결정을 동 요청이 제기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청한 바,

**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:**

**1. 피청구국의 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관련 절차일정표**

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, 그리고 FTA 제 11.20 조제 7 항에 명시된 기한을 벗어나, 피청구국이 2019년 1월 25일 본안 전 이의제기 서면을 통해 제기한 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관련 아래의 절차일정표를 적용한다: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반대서면	2019년 4월 19일 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피청구국의 답변	2019년 6월 28일 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답변	2019년 9월 6일 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심리 (뉴욕)	2019년 10월 2일(수)-4일(금)

## 2.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에 관한 결정

중재판정부는 추가적인 별도의 관할권 단계에 관한 요청의 불가 여부 및 시기 등 그 허용성을 판단한다.

### 근거:

FTA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(1976) 중재규칙 중 어느 규정도 중재판정부가 추가적인 관할권 단계에 관한 요청이 실제로 제기되기 이전에 이를 불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. 추가적인 관할권 단계의 요청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허용 여부는, FTA 및/또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(1976) 중재규칙에 따라, 동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성격 및 이의제기의 범위를 포함하여 동 요청이 제기되는 특정 상황을 고려한 이후에만 결정되어야 한다.

중재지: 싱가포르

(서명)

Professor Dr. Klaus Sachs

(의장중재인)

중재판정부 대표